

규제영향분석서 미침부 확인서

□ 법령명

- 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□ 미침부 사유

- 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 개정('26.3.10.)으로,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·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,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을 작성·이행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'방위사업에 관한 사항'에 해당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(접수번호 : 2026-3844호)

2026. 7. 3.

국 방 부 전 력 정 책 과